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비 지급기준

전면개정 2020. 6. 1 개정 2023. 3. 8

개정 2024. 2. 7

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이 공사에 재직하는 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무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급기준) ① 경조비는 축의금, 조위금, 재해위문금으로 구분한다.

- ② 경조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③ 재해위문금의 지급대상인 재난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.
- 1. 재난 1등급 : 천재 (홍수, 지진, 화재)에 의한 재산손실액 300만원 이상
- 2. 재난 2등급 : 천재 (홍수, 지진, 화재)에 의한 재산손실액 100만원 이상
- ④ 회갑, 칠순, 팔순 기준일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한다.

제3조 (경조사 발생시기) 경조비는 재직 중에 발생한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한다.

제4조 (신청기간) ① 경조비는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② 경조비는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신청방법) 공사 포털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결재로 신청한다.

제6조 (중병서류) 경조비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경조사가 게시판에 공지된 때에는 게시물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 (지급시기) 매월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경조사 사유 발생일이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일 경우 종전 기준 에 의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경조비 지급기준

(단위 : 만원)

구분	종류	본인	배우자	본인	배우자	본인	배우자	7114	본인	배우자
				부모		조부모 외조부모	조부모	· 자녀	형제자매	
축의금	결 혼	50						30	20	20
	출 산	200	200							
	회갑,칠순,팔순	30	30	30	30					
조위금	사 망	100	100	100	100	30	30	100	30	30
자해 위문금	질 환	o 본인 60일 이상 장기 입원 : 30								
		o 본인 15일 이상 60일 미만 입원 : 20								
	재 난	o 본인 재난 1등급 : 50								
		o 본인 재난 2등급 : 30								

- 1) 출산 축의금은 다태아일 경우 자녀 수별로 지급한다.
- 2) "회갑"은 만 60세, "칠순"은 만 69세, "팔순"은 만 79세를 기준으로 한다.